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면제대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써”를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써”로 하고 동조 1호 내지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 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부칙(조례 제 60호, 1988. 5. 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2 조(면제대상) <u>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로서</u>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2 조(면제대상) <u>다음 각호의 사회교육 시설로서</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u> 2. <u>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한국노동교육원</u> 3. <u>교통부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u> 4. <u>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설</u> 5. <u>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u>